

상조회 회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 11. 6		16		
2	2015. 3. 6		17		
3	2015. 6.12		18		
4	2018. 12. 7		19		
5	2020. 6. 1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상조회 회칙

- 제1조 (명칭)** 본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상조회(이하 '본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2조 (목적)**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은 물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구성)** ① 본회의 회원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에 재직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산학협력중점교수, 교육중점교수, 연구중점교수) 및 직원(일반직, 기술직, 실습사무직)으로 한다.
- ② 가입금(찬조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당시 자산을 회원수로 나누어 산정)은 회원 자격 취득 후 의무적으로 세 번째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상조회비는 회원 자격 취득 후 첫 납부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가입금 및 상조회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.
- ⑤ 회원의 자격상실은 면직발령에 한한다.
- ⑥ 회원 휴직시 회원 자격은 유지되며, 휴직기간 동안의 회비는 복직 후 첫 급여 수령시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임원)** ① 본회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회장 1명, 총무 1명, 감사 1명과 이사 7명을 두며, 임원 외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1. 고문 : 총장 및 원로교수(이사회에서 추대)
 2. 회장 : 사무처장(당연직)
 3. 총무 : 총무팀장(당연직)
 4. 감사 : 회장이 임명
 5. 이사 : 교원 4명, 직원 3명을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 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,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가 그 직을 대행한다.
- ② 삭제
- ③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일반을 총괄한다.
-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 (사업)** 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1. 회원에 대한 복지자금 대출
 2. 회원 및 배우자, 회원의 호적상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경조사시 보조금 지급
 3.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보조금 지급
 4. 회원이 사고 및 질병에 의거 치유를 요할시 위로금 지급. 단, 단순사고 및

질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5. 삭제

6.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타 사업

- ② 제 ①항의 세부 사업계획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하며, 그 세부 사항은 『교직원 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다.
- ③ 회원의 경조사시 지방인 경우, 회장단의 결정으로 2인 이내의 대표를 선정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총회) ① 본 회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총회로 대체할 수 있으나, 결의된 사항은 전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 회의 예산, 결산, 재산의 취득, 관리에 관한 사항
2. 『상조회 회칙』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『교직원 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9조 (의결)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 (기금) 본 회의 재정은 개인별 출자금 및 월 회비, 이자수입, 기타 찬조금과 보조금으로 한다.

제11조 (사업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대학의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한다.

제12조 (예산 및 결산)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시까지 전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
제14조 (기타) 복지자금의 대부 및 이자, 대부의 제한, 대부금 상환, 연대보증, 경조의금 종목 및 한도액 등 본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토의와 함께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회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199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9-1. (구성에 관한 특례) 제3조제2항에 의거, 2020년 6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실습사무직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, 퇴직 시 까지 상조회 회원이 될 수 없다.